



[ESG] 지배구조 규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Analyst 엄수진 sujineom@hanwha.com 3772 7407

‘감액배당’이란?

감액배당이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일정 수준 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를 배당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납입한 자본을 돌려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감액배당은 일반 배당과 달리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5년 7월 현재, 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감액배당 과세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감액배당 과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은 감액배당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차규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등 12 인, 2025.07.17 발의)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 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제 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1. ~ 7. (현행과 같음) 8.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 마.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자료: 국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등 12 인, 2025.07.17 발의) 신규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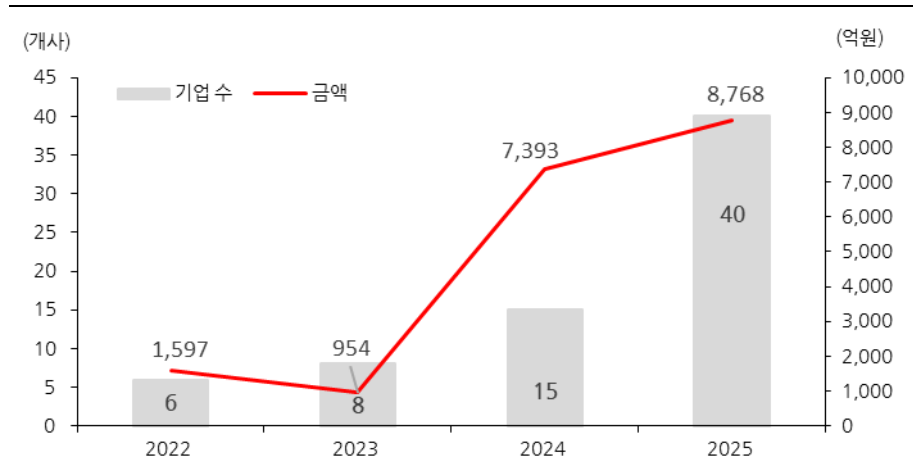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 17 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생 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생 략) ②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신 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 1 항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 1 항제 5 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제 17 조(배당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 다.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 2 항제 7 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 한정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자료: 국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수 년 간 감액배당 실시 기업 및 금액 증가 추세

감액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수는 2022년에 6개사에 불과하였으나 2023년 8개사, 2024년 15개사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무려 40개사에 달한다. 감액배당 금액 또한 2022년에는 1,597억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8,768억원으로 수 년 새 대폭 증가했다.

[그림1] 감액배당 실시 기업 수 및 감액배당 금액



자료: 리더스인덱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감액배당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꼭 지금이어야 하나요?

차규근 의원 등은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과, 감액배당 금액 중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이익잉여금이 충분함에도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해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도 있었고, 만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감액배당을 실시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덧붙여, 수 천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대주주도 감액배당의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세수 확보 목적뿐 아니라 감액배당이 오용·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新 정부 출범 후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담은 개정 상법 통과 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곧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된 이 시점에, 감액배당에 대한 세금 부과를 거론하는 것이 다소 아쉽다. 진정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려는 선의를 가진 기업들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고, 주주환원율이 높은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분위기가 퇴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며(예: 부채비율이 낮음) 명확한 배당정책을 공시한 기업 등이 실시하는 감액배당은 건전한 주주환원책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 같다.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